

## 오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

제정	1989년	1월	1일	조례	제	26호
개정	1989년	5월	22일	조례	제	130호
개정	1989년	12월	4일	조례	제	156호
개정	1991년	8월	13일	조례	제	254호
개정	2000년	12월	23일	조례	제	634호
개정	2005년	9월	28일	조례	제	846호
개정	2009년	8월	7일	조례	제	1039호
일부개정	2019년	9월	30일	조례	제	1738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장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9. 9. 30]

**제2조(장학생의 자격)** 장학생은 통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으로 한다. 다만, 국가, 타 지방자치단체, 학교,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수업료 등을 지급받거나 면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.

[전문개정 2019. 9. 30]

**제3조(추천)**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통장자녀 장학금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추천한다.

[전문개정 2019. 9. 30]

**제4조(선발)**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00. 12. 23, 2019. 9. 30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,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9. 30>

③ 삭제 <2019. 9. 30>

**제5조(장학생의 정원)**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. <개정 89. 12. 4, 91. 8. 13, 2000. 12. 23, 2019. 9. 30>

**제6조(장학금액)**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 전액으로 한다. 다만, 예산의 사정에 따라 수업료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9. 30>

**제7조(장학금의 지급)**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통장에게 지급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9. 30>

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한다. 다만,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한다. <개정 2019. 9. 30>

**제8조(지급의 중지)**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. <개정 2000. 12. 23, 2019. 9. 30>

1.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자격을 상실한 때
2. 타 기관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이나 수업료를 지급받은 경우
3. 장학생이 퇴학,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
4.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
5. 장학금을 수업료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

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19. 9. 30>

③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9. 30>

[제목개정 2019. 9. 30]

**제8조의2(장학금의 환수)** 시장은 장학금이 중복 또는 잘못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9. 9. 30]

**제9조(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)**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, 보조금, 성금으로 한다. <개정 2000.

12. 23>

**제10조(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부칙**

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1989. 5. 22 조례 제130호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제2조 중 통장의 근속기간은 종전에 이장으로 재직한 기간도 통 장 재직 기간으로 한다.

**부칙** <1989. 12. 4 조례 제156호>

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1991. 8. 13 조례 제254호>

이 조례는 1991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00. 12. 23 조례 제63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05. 9. 28 조례 제84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09. 8. 7 조례 제103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19. 9. 30 조례 제173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